

임대주 및 세입자 용

LEASE AGREEMENT

1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료 보조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료 지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법원 기일에 참석하십시오.

참석이 요구되는 회의와 공판 등 모든 법원 기일에 원격으로 또는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3 법원에 연락하십시오.

질문이 있거나 법원 행사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경우, 임대 건물이 위치한 카운티에 있는 법원 특별 민사 담당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4 임대료 보조를 신청하십시오.

임대주와 세입자는 임대료 보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또는 임대주가 법원에 통지하고 신청 증명을 제출할 경우, 법원은 해당 신청서가 검토되는 잠시 동안 사건 진행을 연기할 것입니다.

5 임대주의 협력

임대주는 세입자가 제출하는 임대료 보조 신청에 협력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보조를 신청할 때, 임대주는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고, 제공된 임대료 보조금을 수락하며, 이러한 보조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하지 않으며 협조해야 합니다.

6 임대주는 법원 절차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특별 민사 담당관만이 퇴거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가 자물쇠를 바꾸거나, 문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가스, 수도 또는 전기를 끊어서 세입자의 퇴거를 종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주가 불법으로 자물쇠를 바꿔 세입자가 집에 못 들어오도록 한 경우에 세입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뉴저지 주 검찰총장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j.gov/oag/dcj/agguide/directives/ag-Directive-2021-2_Illegal_Evictions.pdf.

7 퇴거 방지 또는 연기 옵션.

법원이 소유권 인정 판결을 한 후에도, 세입자는 퇴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세입자는 가능한 옵션을 설명하는 통지문을 받을 것입니다.

자료 정보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DCA) (공동체 사안 지원부)는 뉴저지 전역에서 임대료 보조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a.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CVERAP) (COVID-19 긴급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은 저소득 가정에 일시적인 임대료 보조를 제공합니다.
- b. DCA는 자격 조건에 맞는 임대주 및 세입자에게 CVERAP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c. 임대료 보조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규칙적인 추첨 제도를 통해 보조금이 수여됩니다.
- d. 보조금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주에게 직접 제공됩니다.

COVID-19 긴급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www.nj.gov/dca/cverap2.shtml을 방문해 주십시오.

ADA 지원 또는 통역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법원에 연락해 주십시오.



스튜어트 래브너
수석판사

글렌 A. 그랜트
법원행정처장 대행

제니퍼 M. 페레즈
1심법원 실장

타이론다 E. 피닉스
민사소송 부실장